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7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상 시설종류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「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명칭 및 법문 용어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문 용어 변경(“보호” → “이용”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: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5. 19.~2026. 6. 8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8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9. 예산수반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간 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)을 “주간이용시설(이하 “이용시설”)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주간보호”를 “주간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호장애인”을 “이용장애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 보호장애인”을 “그 밖에 이용장애인”으로, “지역내 장애인 복지 요구”를 “지역 내 장애인 복지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운영요원)” 을 “(운영 요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호시설에 시설장” 을 “이용시설에는 이용시설의 장” 으로, “운영요원” 을 “운영 요원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5 1. 공통기준 제5호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.

③ 운영 요원의 보수기준은 「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권고기준을 따른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보호시설에” 를 “이용시설에” 로, “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” 을 “이용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호시설” 을 “이용시설” 로,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호” 를 “이용시설을 이용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감염병질환” 을 “감염병 질환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보호시설” 을 “그 밖에 이용시설” 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실비징수)” 를 “(이용료 등 징수)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용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의한 수급대상장애인” 을 “따른 수급 대상 장애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” 을 “이용시설의 장은 이용시설” 로, “단기보호” 를 “단기이용” 으로, “한도 내” 를 “한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이용료 산정은” 을 “이용료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설운영의 제반비용만으로” 를 “이용시설의 운영비로만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호시설의 운영” 을 “이용시설의 운영” 으로, “있으며 보호시설” 을 “있으며, 이용시설” 로, “검사에 응하여야” 를 “검사를 받아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호시설” 을 “이용시설” 로, “시설장” 을 “이용시설의 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호시설” 을 “이용시설” 로,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이용시설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조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보조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조례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조례의 시행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선 미
	팀장 직위 · 성명	복지시설팀장 안 선 경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박 정 은 (031-5182-1013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	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에 따른 <u>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</u> ----- -----.		
제2조(위치) 하남시 장애인 <u>주간 보호시설</u> 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	제2조(위치) ----- <u>주간 이용시설</u> (이하 “이용시설” 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.		
1. · 2. (생 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기능) <u>보호시설</u> (이하 “보호 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<u>각호</u> 의 기능을 수행한다.		제3조(기능) <u>이용시설</u> 은 다음 <u>각 호</u> 의 기능을 수행한다.		
1. 재가장애인에 대한 <u>주간보호</u>		1. ----- <u>주간이용</u>		
2. <u>보호장애인</u> 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		2. <u>이용장애인</u> ----- -----		
3. <u>기타 보호장애인</u> 의 사회적응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급식소 등 <u>지역내 장애인 복지요구</u> 증진에 필요한 사업		3. <u>그 밖에 이용장애인</u> ----- ----- <u>지역 내 장애인 복지</u> -----		
제4조(<u>운영요원</u>) ① <u>보호시설</u> 에		제4조(<u>운영 요원</u>) ① <u>이용시설</u> 에		

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.

② 운영요원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하남시장<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>이 따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5조(입소자격)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.

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퇴소조건)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
는 이용시설의 장----- 운영요원-----.

② 운영요원의 자격 기준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5 1. 공통기준 제5호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.

③ 운영요원의 보수기준은 「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권고기준을 따른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입소자격) ① 이용시설에 ----- 이용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-----

-----.

<삭 제>

제6조(퇴소조건) 이용시설-----
---- 각 호-----

-----.

1. (생략)

2.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
3. 감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(실비징수)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, 견학, 단기보호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한다. 다만,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이용시설을 이용-----

3. 감염병 질환-----

4. 그 밖에 이용시설-----

제7조(이용료 등 징수) ① 이용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----- 따른 수급 대상 장애인-----
-----.

② 이용시설의 장은 이용시설-----
----- 단기이용 -----

----- 한도-----

-----.

③ 이용료는 -----
-----.

-----.

④ 징수된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감독 등)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.

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

④ ----- 이용시설의 운영비로만 -----
--.

제8조(감독 등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용시설을 지도·감독한다.

② -----
- 이용시설의 운영-----

----- 있으며, 이용시설-----
----- 검사를 받아야 -----
-.

③ -----
----- 이용시설-----

----- 이용시설의 장-----
-----.

④ 이용시설----- 각 호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-----

제9조(위탁운영) ① -----

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물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.

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-----, <후단

삭제>

② -----

-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
예 -----
-----.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26. 1. 1.] [보건복지부령 제1149호, 2025. 12. 31., 일부개정]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5. 7. 1.>

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(제41조 관련)

구 분	시설의 종류 및 기능
2.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	가. 장애인복지관: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·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. 삭제 <2012.4.10> 다. <u>장애인 주간이용시설</u>: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라. 삭제 <2012.4.10> 마. 삭제 <2012.4.10> 바. 장애인 체육시설: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. 장애인 수련시설: 장애인의 문화·취미·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·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.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: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,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, 보행·점자·정보화 등 교육,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. 수어통역센터: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 | | |
|--|---|
| | <p>차. 점자도서관: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</p> <p>카.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: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</p> <p>타.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: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·미술·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, 상담,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</p> |
|--|---|